

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(안 제3조제1항 별표)

4.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별지와 같음

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송목적의 값	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
2,000만원까지 부분	10%
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 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$\frac{8}{100}$]	8%
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$\frac{6}{100}$]	6%
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x $\frac{4}{100}$]	4%
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천만원) x $\frac{2}{100}$]	2%
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x $\frac{1}{100}$]	1%
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[1,340만원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x $\frac{0.5}{100}$]	0.5%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제3조의 별표]		[제3조의 별표]	
소송목적의 값	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	소송목적의 값	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
1,000만원까지 부분	8%	2,000만원까지 부분	10%
1,000만원을 초과하여 2,000만원까지 부분 [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,000만원) × $\frac{7}{100}$]	7%	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 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× $\frac{8}{100}$]	8%
2,000만원을 초과하여 3,000만원까지 부분 [15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× $\frac{6}{100}$]	6%	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× $\frac{6}{100}$]	6%
3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 [21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3,000만원) × $\frac{5}{100}$]	5%	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× $\frac{4}{100}$]	4%
5,000만원을 초과하여 7,000만원까지 부분 [31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× $\frac{4}{100}$]	4%	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천만원) × $\frac{2}{100}$]	2%
7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[39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7,000만원) × $\frac{3}{100}$]	3%	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× $\frac{1}{100}$]	1%
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[4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× $\frac{2}{100}$]	2%	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[1,3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× $\frac{0.5}{100}$]	0.5%
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[6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× $\frac{1}{100}$]	1%		
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[98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× $\frac{0.5}{100}$]	0.5%		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7